

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
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2 월 27 일

여 수 시 장 김기중



여수시 조례 제2168호

붙임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없다”를 “없으며,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,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증빙자료를 첨부하여”를 “용역보고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“의원연구사례집”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 회의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<u>없다</u>. 다만,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 <p>제10조(연구단체 지원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~ ⑥ 삭 제</p> <p><신 설></p> <p>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매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<u>증빙자료를 첨부하여</u>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</p>	<p>제9조(위원회 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 <u>없으며,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연구단체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,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용 <u>역보고서를</u> ----- -----.</p>

한다. 다만,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“의원연구사례집”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“의원연구사례집”으로 발간할 수 있다.